

#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심사보고서

1996. 2. 3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1996. 1. 27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1996. 1. 27

다. 상정일자 :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1996년. 2. 3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정환)

### 가. 제안이유

○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부당이득금도로점용료징수조례 규정 신설

○ 도로점용허가 후 허가취소 및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했을 때 점용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3조2)

○ 도로점용료 감면범위를 세부적으로 개정(제4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전액 면제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관, 송유관시설, 가스관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점용료는 50% 감면

·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 및 시장이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 감면

○ 수수료의 징수

·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징수규정 신설(안제7조)

- (점용료 산정기준표) (별표1)의 점용물의 종류란의 제1호 중 “송전탑” 다음에 “변전기·저장고·전력구·통신구·작업구(맨홀)”를 각각 삽입하여 현 실정에 맞게 징수근거 마련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이득금의 징수대상은?</li> <li>○ 동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li> <li>○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6항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한 점용허가 대상 및 점용료 징수는?</li> <li>○ 이면도로상에 장기적으로 적치하고 있는 적치물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 조례와의 모순이 아닌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는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임.</li> <li>○ 기존 조례의 운영 및 제도상의 미비, 부족한 사항을 도로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 보완하는 내용임.</li> <li>○ 제일병원, 신한일전기, 부천지하상가 등이 있으며,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음.</li> <li>○ 이면도로상의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하여 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li> </ul>

4. 토론요지

없 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7
------	----

제출년월일 : 1996. 1. 27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도로법(93. 3. 10 법률 제4545호 개정) 및 동법시행령(93. 8. 14 대통령령 제13958호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 주요골자

- 목 적(안 제1조)
  -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도로점용료·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안 제2조)
  - 도로점용료 :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
  - 부당이득금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
-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안 제3조, 제4조)
  - “별표1”의 기준에 의함
    - 예) 전주 1개 1년 동안 점용의 경우 : 600원
    - 시설안내표지 1개 1년 동안 점용의 경우 : 12,500원
  -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부과
  - 취소 및 기간단축하였을 경우에는 감액
-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조정(안 제5조)
  -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할 때 적용
  - “별표2”의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
- 도로점용료 등의 감면(안 제6조)
  - 전액감면 : 공공목적 수행을 위한 법인의 비영리사업
  - 2분의 1감면 : 공익사업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사업
  - 건설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 재해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시기(안 제7조)
  - 도로점용료
    -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징수
    - 1년 이상 : 도로점용허가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 부당이득금 : 무단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
- ※ 1년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 징수 :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함(안 제8조)
- 수수료 징수(안 제9조)
  - 대상 :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 감면 : 도로점용료 등의 감면규정 적용
- 징수위임 :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에 의함(안 제10조)

###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 조례 호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로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권을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허가권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년도별로 산정한다.

제4조(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 안으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④부당이득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시기) ①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점용시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시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3. 부당이득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담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②점용시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8조(징수) ①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도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징수의 위임)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는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에 의한다.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③(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접용료산정기준표

(금액의 단위: 원)

접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접 용 료		
		접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주	1개	1년	600		
	전주와 유사한 것			900		
	공중전화	접용면적 1제곱미터	1년	24,100		
	송전탑, 변전기, 저장고,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작업구(맨홀) 및 기타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직경 0.1미터 이하	길 이 1미터	1년	150	
		직경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300	
		직경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600	
		직경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900	
		직경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1,200	
		직경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			1,500	
		직경 1.0미터 초과			3,000	
		기타의 관			직경 0.1미터 이하	길 이 1미터
	직경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450			
	직경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900			
	직경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1,350			
	직경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1,800			
	직경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		2,250			
	직경 1.0미터 초과		4,5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 접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기 타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15,000
		사 설 안 내 표 지		1개	1년	12,50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기타의 용도				100		
아 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년	30,000	
	기 타	1제곱미터	15,00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4 주유소, 주차장, 여객 자동차터미널, 화물 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 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 입 로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 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 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 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1제곱미터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시설및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일	100
	기 타		1제곱미터	1 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 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 년	토지가격에 0.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장물, 물건 및 시설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		점용면적	1 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기 타		1제곱미터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10원단위로 끊어져 산정한다.
6. 위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인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전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7. 위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별지 서식]

(세의)  
납입고지서

(세의)  
영수필통지서

(세의)  
영수필통지서

(세의)  
영수필통지서

(세의)  
영수필통지서

제 호	부천시 구 동 번지 귀하	
19 년 정기분 수시분		
관:    항:    목:		
세목	구분 고 지 세 액	
	본 세	가산금
도로부지 접 용 료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19 년 월 일		
납부장소: 시중은행 및 시금고		
19 년 월 일		
부천시 구청장		

제 호	부천시 구 동 번지 귀하	
19 년 정기분 수시분		
관:    항:    목:		
세목	구분 고 지 세 액	
	본 세	가산금
도로부지 접 용 료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수신처	(인)	
부천시 구청장 귀하		

(시금고통보용)

제 호	부천시 구 동 번지 귀하	
19 년 정기분 수시분		
관:    항:    목:		
세목	구분 고 지 세 액	
	본 세	가산금
도로부지 접 용 료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수신처	(인)	
부천시 구청장 귀하		

(세무과통보용)

제 호	부천시 구 동 번지 귀하	
19 년 정기분 수시분		
관:    항:    목:		
세목	구분 고 지 세 액	
	본 세	가산금
도로부지 접 용 료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 통지합니다.		
수신처	(인)	
부천시 구청장 귀하		

(수신처보관용)

제 호	부천시 구 동 번지 귀하	
19 년 정기분 수시분		
관:    항:    목:		
세목	구분 고 지 세 액	
	본 세	가산금
도로부지 접 용 료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 통지합니다.		
수신처	(인)	
부천시 구청장 귀하		

[별표 2]

## 점용료 조정산식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남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1/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 [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증가율-500/100)×5/100}]